순천시 공고 제2024-225호

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4일

순 천 시 장

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
- O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통한 장기재직 동기 부여·사기진작
-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

2. 주요내용

- (안 제16조) 상위법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 연가전환제 도입
 - "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" 조항 신설
- (안 제17조 3항) 재직기간 5~10년차 장기재직 휴가 신설 : 5일
 - 가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- (안 제17조 6항) 성별영향평가 개선안 반영 : 입영 → 입대
 - "입영 자녀 ", "입영 시" → "입대 자녀", "입대 시"
- (안 제17조 8항) 출산장려휴가 분할 사용 기준 마련
 - "분할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, 사용기준은 제3항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"
- 3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1. 24. ~ 2024. 2. 13.(21일간)

4. 의견제출

- O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 18: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(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. 주소 및 전화번호
 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 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: (전자메일) shk5517@korea.kr (팩스) 061-749-4614

5. 그 밖의 사항

-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총무과(☎ 061-749-56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-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「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6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제17조(종전의 제16조) 제3항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 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입영 자녀"를 "입대 자녀"로, "입영 시"를 "입대 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"있다"를 "있고,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기준은 제3항 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 제한다.

가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5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16조(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)
	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
	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
	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
	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
	전환 하여 사용할 수 있다.
<u>제16조</u> (특별휴가) ①·② (생 략)	<u>제17조(</u> 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	3
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	
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	
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	
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	
조제2항에 따르며, 재직기간별	
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	
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	
하여 사용할 수 있다.	
1. 휴가 일수	1
<u>〈신 설〉</u>	<u>가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</u>
	<u>만 : 5일</u>
<u>가</u> . ~ <u>다</u> . (생 략)	<u>나</u> . ~ <u>라</u> . (현행 가목부터 다목
	까지와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-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⑥ -----자녀의 입영 시 2일의 휴가를 받------을 수 있다.-------
- ⑦ (생략)
- ⑧ 공무원(배우자를 포함한다)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 ⑨ (생 략)

 제17조 ~ 제19조 (생 략)

(6) <u>입대 자녀</u>
입대 시
⑦ (현행과 같음)
8
있고, 분할
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기
준은 제3항 제2호의 기준을 따른
<u>다</u> . <u>〈단서 삭제〉</u>
⑨ (현행과 같음)
<u>제18조</u> ~ <u>제20조</u> (현행 제17조부
터 제19조까지와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ス	ᅡ치	법급	규명	:
-----	----	----	----	---

O 성명(단체명):

O 주 소:

O 연 락 처:

자치법규 내용		찬성	여부		6) 74 u) ¬
사시법ㅠ 내용	찬	성	반	대	의 견 비고